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공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연 수 구
감 사 실

2022년 연수구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특정감사 결과보고

- ☐ 감사대상 : 16개 관리부서 및 276개 보조금·위탁금 지원단체(중복 제외)
- ☐ 감사기간 : 2022. 8. 11. ~ 8. 31. (14일)
- ☐ 감사범위 : 2020. 1. 1. ~ 2022. 6. 30. 추진업무 전반
- ☐ 감사반 : 감사반장 등 8명
- ☐ 중점 감사사항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여부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이행, 관리 등 수행능력
 - 지방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운영 절차
 -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집행·정산
 - 관리부서 지도·감독 적정

감사성과

- ☐ 총 지적 건수 : 9개 부서, 총 23건 지적
 - (처분요구) 26건(주의 15건, 시정 6건, 권고 5건)
 - (재정상 조치) 178,500원(추징)
 - (신분상 조치) 3명(훈계)

총 평

- 이번 감사는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단체 및 관리·감독부서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 성과평가까지 **구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특정감사**를 통하여 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및 위탁금 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특정감사임.
- 2022. 8. 11. ~ 8. 31.까지 총 14일간 실시한 감사결과, 총 2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되어 주의, 시정, 권고 등 26건의 처분요구를 하였으며, 이중 관련자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훈계), 178,500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추징)를 요구하였음.
- 주요 지적사례로는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불명확한 보조금 및 자부담 편성 기준 ▲보조금 및 위탁금 지원절차 위반 ▲저조한 사업성과 및 효과성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소홀 ▲담당자의 정산검사 소홀 및 형식적인 사업 성과평가 등이 있음.
- 특히 관리·감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수급이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관 및 부서별 유사·중복사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특정단체가 추진하는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지원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 또한 지방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부서 자체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을 모호하게 수립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한 회계처리와 위탁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성·집행되었으며, 지원단체(기관)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자부담 편성기준으로 보조사업이 비효율적, 비합리적으로 운영됨.
- 마지막으로,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검토 등 의무적인 사전 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사업 성과평가를 소홀히 하여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개인 부주의로 보조금 정산서류를 분실하거나 민간위탁금 정산검사를 누락한 담당공무원 3명에게는 훈계 조치함.
-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불요·불급한 민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대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구 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과 각종 지침 및 매뉴얼 정비가 필요함.

컨설팅감사

< 개 선 목 표 >

- | | |
|---|---|
| ☒ 성과 중심의 보조·위탁사업 재편 |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 ☒ 사업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 책임감 있는 보조·위탁사업 운영 |
| ☒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 실시 | ☒ 보조사업 사후관리 체계 확립 |

개 선 과 제		개 선 방 향
1	동일단체의 유사사업 중복 지원 및 예산 낭비	① 부서(기관) 간·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② 동일단체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제한 요건 마련 ③ 부서별 보조(민간위탁) 사업의 전면 재검토 - 사업의 성과, 효과성, 지원대상의 적격성 등에 따라 재편 ④ 보조사업자로서 책임감 부여를 위한 자부담금 편성 권장 ⑤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철저 ⑥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액 환수 철저
2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사전절차 미준수	① 부서의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 사전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표준안 마련·배포 ②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 공모사업자 선정 시 구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안건에 따른 심의방법(서면, 일괄, 집중) 탄력적 운영
3	불명확한 사업별 예산편성·운영 기준	①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사업별 예산편성·운영기준 마련 - 사업별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 새울 업무게시판 공시·공유 ② 사업예산 편성 시 구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예산과목 및 기준금액 설정
4	구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수탁자) 업무 미숙	① 담당자 업무 소홀로 인한 관련규정 및 절차 위반 시 처분 강화 ②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 대상 회계처리 교육 실시
5	형식적인 정산검사 및 사업 성과평가	① 보조(위탁)사업별 계량화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기재 ② 성과평가 시 평가항목별 검토내용 기재 ③ 부서별 정산검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이행실적 관리 및 지속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외 3개부서

【행정상 조치】 주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동일단체에 대해 부서별 보조금 중복 수혜에 따른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해당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지방재정운용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지방보조금법) 제1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지방보조금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이에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각 부서별 보조금 지급현황 및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공모사업 관련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현재 “공모사업”과 관련한 공통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한 법령이나 지침 등은 전무한 상황으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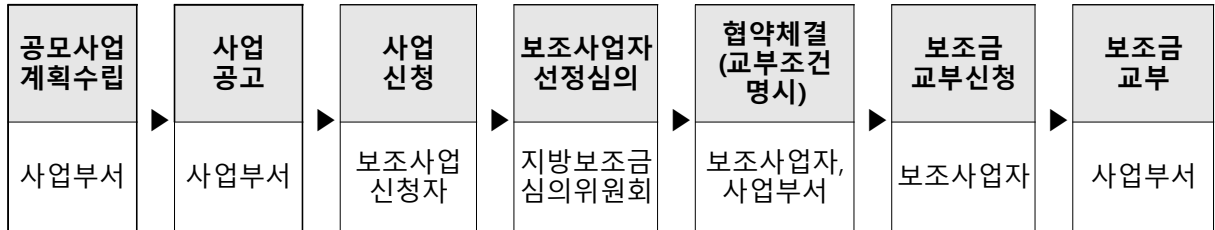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비고
조례	0	1	0	1	1	1	0	1	2	9	6	5	3	13	4	11	0	

(참고) 1.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만 제정함 2. 충남 계룡시 : 시행규칙까지 제정

- 지방보조금의 표준적 운영방식 확립 및 효율성 증대와 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보조금제도 운영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해당 매뉴얼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 특성에 맞게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법령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관련 지침은 현재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이며, 연수구의 공모사업 관련 조례 및 세부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현행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른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지방보조사업 운영절차



- 위 지방보조사업 운영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심의 또는 자체심의위원회 심의 후 연수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며, 연수구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결정을 하고 있다.
- 그리고 각 사업별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요건을 토대로 공모 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전확인 절차로 타 기관 등에 중복지원 사업여부를 조회 요청을 하고 있으나, 이는 회신 공문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타 기관 등의 회신이 없는 경우 실제로 중복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부서별로 유사·중복사업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 각 부서별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지원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참고]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2022) 19페이지

※ 사업부서에서 실무검토 및 자료 작성 시 검토해야 할 사항

- ▶사업자 적격성 : 국가, 인천시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보조사업자의 적격성 여부 (지원 불가 단체 등)
- ▶사업 적격성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원불가 사업 여부, 자치단체 직접 운영 행사, 일몰도래사업 여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지지 또는 반대 목적의 사업 여부,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여부 등
- ▶사업계획의 적정성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자기자금(필요 시)의 부담능력 여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금액산출 등

[표2] 부서별 동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1	☆☆☆☆	2021	□□□	<사업명 : ♠> - 기후위기대응 문예대회 - 기후위기대응 연수구 온라인퀴즈대회, 장수사진 촬영	4,542	
			■ ■ ■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슬기로운 마을생활(기후위기 강의, 천연세제 만들기, 환경지킴이 워크숍)	6,975	
총 계					11,517	
2	★★★★	2022	□□□	<사업명 : ♥> 1) 발직한 성교육 4회 2) 발직한 성교육 연구모임 6회 3) 어린이를 위한 동의(책읽기, 내용보기, 사후 활동)	1,790	
			■ ■ ■	<사업명 : ♥> 1) book치고 놀이하고 : 책놀이(장난감·간식 만들기, 업싸이클링) 2) 우리동네 피카소(스케치를 이용한 나만의 그림 그리기) 3) 공동체 공간대여	5,000	
				<사업명 : ♣> - 꿈지락 놀이터 공간 리모델링(인테리어·전기공사, 공유부엌, 샷시 교체 등)	30,000	
총 계					36,790	
3	○○○○	2020	△△△	- 인건비 지원	27,462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1,200	
				- 보험료 지원	337	
			▲▲▲	<사업명 : ♣> - 전통문화 활동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여 코로나19, 피부질환에 대비하는 생활용품 만들기 등(마스크, 무릎담요, 속옷 등 천연염색, 사랑의 공동체 구성을 통해 함박마을 고려인 교육 및 제품지원) ※ 사업성격 : 지역커뮤니티 형성, 힐링 수다 등의 문화예술 공동체 활동	9,999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	<사업명 : ○> - aaa 거주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얼쑤장터"(스카프 및 티셔츠 염색, 전통주머니·펠트 등 만들기, 달고나·송사탕·떡·사과단자 등 만들기) - 고려인 마을 수업 지원 : 실크 스카프, 마스크 염색 수업	5,650	
		소 계			44,648	
		2021	☺☺☺	-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독창적, 차별적 창의능력 개발과 진로체험(떡 만들기 등)	10,000	
			▽▽▽	<사업명 : ◆> - 유아,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 3개의 프로그램(교육) 운영 (스카프·텐셀·면티 염색, 정서지능 역량 진단, 디자이너 역할하기, 작품 전시)	3,880	
			▲▲▲	<사업명 : ■> - 외국인 대상 내·외국인들이 문화체험, 교육을 통해 공동체 형성 (쿠키 만들기, 커피 배우기, 전통염색 체험, 전통 장류 체험)	10,000	
			■■■	<사업명 : ●> - aaa동 주민 및 고려인과 외국인 대상 염색체험, 펠트 등 규방공예, 고려인 마실가기 활동	5,000	
			△△△	- 인건비 지원	35,803	
		소 계			64,683	
		2022	▽▽▽	- 개인의 정체성 개발을 통한 개인의 적성 찾기 :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 AI인공지능 자유의지 및 창의능력 진단, 천연염색, 리폼 등	6,310	
			■■■	<사업명 : ●> - aaa동 거주, 내·외국인 대상 고려인, 다문화가족 천연염색 전통체험(티셔츠, 스카프 등), 전통 음식 만들기(치자 샐러드, 쑥송편), 고려인 마을 마실가기	4,000	
			△△△	- 인건비 지원	10,201	
			소 계			20,511
총 계				129,842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4	●●●●	2020	▼▼▼	<사업명 : ☞> - 죽대있는 부모강좌 : 작가와의 만남 및 인권강좌를 통한 마을 주민 만나기 - 마음성장 책읽기 : 깊이 있는 책읽기로 심리치유 활동 - 오른발왼발 : 장애인 책 읽어주기 활동	2,831		
				- 평화 인권 성평등 모임의 활성화 신간 도서 구입	2,360		
				- 도서관 환경개선(냉장고·컴퓨터 교체, 복합기 구입,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용품 구입)	2,500		
			▽▽▽	<사업명 : ☞> - 마을역사 관련 강의 후 나의 책만들기, 무대책·대문책 만들기	1,625		
			■ ■ ■	<사업명 : ☞> 1) 골목탐험대 운영 : 마을의 모습 사진, 그림으로 담기, 골목의 재활용품 수거 후 생활용품으로 재탄생(업사이클링), 장수의자 제작 및 설치 2) 이야기 골목공원 잔치 : 송편나눔 및 전래놀이 등	6,796		
				<사업명 : ☞> - 주요사업 추진내용 1) 모두의 마을, 모두해 : 아동·청소년·어른모임, bbb 모두 모임 2) 모두의마을 동네한바퀴 : 아동 전래놀이 3) 마을식당 : bbb 청소년들이 기획, 요리, 나눔까지 자체적으로 활동 4) 그린업사이클 : 폐식용유·우유곽 활용 비누만들기, 플라스틱컵 활용 행잉플랜트 만들기 등	20,000		
		소 계				36,112	
		2021	▼▼▼	- 도서 1회 이상 대출 및 온라인 인증 완료 참가자 대상 강의 1) 성인 : 온라인·대면 각 2회 2) 청소년(11~14살) : 줌 강의	2,925		
				- 신간 및 성평등, 인권, 환경 주제 도서 구입	1,500		
				- 도서관 환경개선(테이블·책장·의자 교체, 사무용품·방역용품 구입, 소식지 발행, 시설보수)	2,800		
				1) 꼬불꼬불 바위에 생긴 기록(역사 줌 강의, 탁본체험) 2) 종이 이전의 기록(역사 zoom 강의, 북아트)	1,057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	- 서로살림(페미니즘 강의,토론) - 마음살림(미술심리치유 강의) - 환경과이웃(강의, 에코 워크샵) - 업사이클링으로 서로살림(재활용 관련 만들기)	4,430		
			■■■	<사업명 : ■■■> - 마을 공유공간 개방 및 미술 프로그램 운영	5,992		
		소 계				18,704	
		2022	▼▼▼	- 청소년 책읽기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성인 발달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3,000		
				- 평화 인권 성평등 모임의 활성화 신간 도서 구입	2,700		
			▽▽▽	- 도서관 환경개선(시설 수선, 사무용품·방역용품 구입, 장서 구입,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다문화 프로그램))	3,540		
				<사업명 : ▣> - 인문강좌, 서로돌봄상호의존페미니즘워크샵, 나를 찾는 여행(미술심리)	1,330		
			■■■	<사업명 : ▣> 1) 미술 강좌 2) bbb 공유 공간 만들기 3) 책장터 운영	5,000		
		소 계				15,570	
		총 계				70,386	
5	○○○○○	2021	▽▽▽	<사업명 : ▣> - 초·중학생 14명 대상 줌 강의 (제가만들기, 실뜨기, 연수 건축물 만들기, 오카리나 팬던트, 청량산 관련 만들기, 연수지갑 만들기, 두루미 꾸미기 등)	5,548		
				<사업명 : ■■■> - 지역사회 공동체 커뮤니티 구축으로 네트워크 형성 및 공동체 활동(공동체 관련 강의 등)	7,246		
		소 계				12,794	
		2022	▽▽▽	<사업명 : ▣> - 초·중학생 10명 대상 강의 1) 문화재 강의, 나만의 마을 정원 만들기 2) 연수풍경 북·가랜드·액자 만들기 3) 악기·티코스터 만들기, 스트링아트 4) 연수 인형·폐현수막 파우치 만들기, 민속춤 강의	5,500		
			■■■	<사업명 : ♪> 1) 마을 이해하기 : 로컬여행기획, 역량강화교육, 타 지역 탐방 및 사례 분석 2) 마을 들여다보기 : 자원조사, 탐방, 로컬여행 지도 디자인 및 제작 등 3) 마을이 들려주는 이야기 : 골목길 투어, sns 이벤트, 청학 굿즈 배포	4,000		
		소 계				9,500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총 계					22,294	
6	◇◇◇◇◇	2021	■■■	<사업명 : AAA> 1) ccc 마을 교육 공동체 수다장 : 마을교사 온라인 역량강화교육, 성평등한 마을교육공동체 만들기, 기후위기, 마음 돌봄 관련 논의 2) ccc 마을 교육공동체 상상 워크숍 3) 공유공간 지원	4,650	
				<사업명 : BBB> - 공동체명 : ccc 마을넷 - ccc 마을대화모임(활동가 교육 등), 마을공유공간 만들기 '선행 큰 마실' 프로젝트(원데이 클래스, 장터, 공유공간 답사 등)	7,000	
			▼▼▼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 주요사업 : 도서관 운영 워크숍, 책읽어주는 음악회, 숲생태교실, 배리어프리 영화제	35,301	
총 계					46,951	
7	◆◆◆◆◆	2020	△△△	1) 연수구 사회적기업 체험키트 제작, 기업소개 신문 및 웹진 발행, 기업 시그니처 상품 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2)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용 셀프 영상 제작 : 영상 관련 교육, 전문가 멘토링 등	22,210	
				- 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 1) 교육 :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 창업설명회, 공무원대상 공공구매 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찾아가는 구민대상 교육, 사회적경제 역량강화교육 2) 판로개척 : 프리마켓, 체험 및 홍보책자 발행, 체험존 운영 3) 컨설팅 : 인증 집중 컨설팅, 기업 가치와 제품가치화 컨설팅 4) 네트워크 : 선진기관 벤치마킹, 사회적경제 워크숍, 나눔 페스티벌	264,300	
			■■■	<사업명 : CCC> - 강좌 : 천연염색 스카프 만들기, 펠트브로치 만들기	1,000	
			▲▲▲	<사업명 : DDD> 1) Get Health : 쑥뜸, 근육테이핑방법, 부항 등 2) Get Eat : 디톡스쥬스, 장담그기, 간편식 음식 만들기 3) Get Nature : Art flower(꽃꽂이 등 어르신, 아동, 청소년 맞춤 힐링 꽃 이야기) 4) Get Healing : 천연마스크 가울스카프, 면티 염색	8,500	
		소 계				296,010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2021	△△△	<사업명 : EEE> 1) 기업별 홍보용 물품 제작 2) 기업소개 및 리플렛 웹진 발행 3) 온라인 유튜브 홈쇼핑	33,600	
				- 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 1) 교육 : 찾아가는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 창업설명회, 공무원대상 공공구매 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찾아가는 구민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역량강화 교육 2) 판로개척 : 프리마켓, 특성화 사회적경제 구축 지역 기반 클러스터 전략화 사업, 체험 및 홍보책자 발행, 체험존 운영 3) 컨설팅 : 인증 집중 컨설팅, 기업 가치와 제품가치화 컨설팅 지속가능 경영방법 4) 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워크숍	291,539	
			▲▲▲	<사업명 : FFF> 1) 요리조리 : 건강 식재료 활용 음식 만들기 2) 자존감 형성 :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 공유, 천연염색을 통해 창의성 개발 체험 프로그램 3) 건강돌봄 : 쉬운 건강생활법, 혈액순환을 통해 피로 회복 등 4) 꽃과 나 : 개인별 맞춤 꽃꽂이와 이야기가 있는 나만의 꽃 스토리텔링 5) 공감-전시 : 프로그램 결과물 전시 6) 공간 대관 : 생활문화 놀이터	11,912	
		소 계				337,051
		2022	△△△	<사업명 : GGG> -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 지역주민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서비스 "Value up" 체험 - 연수구 사회적경제기업 "Value up Book" 제작 및 배포 - 수익금 및 기부금 후원행사	31,900	
				1) 판로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 영상광고 제작 및 TV방송 광고지원, 네이버 소셜라이브 커머스 방송지원 2) 네트워크 활성화 : 연수구 사회적경제 일자리 한마당 행사 및 워크숍, 간담회 개최	100,000	
				- Untact 서비스지원 일+경험 청년인턴 사업 참여청년 인건비 지원	9,534	
				- 센터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 1) 교육 : 딜리버리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실, 창업설명회, 공무원대상 공공구매 교육,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지역밀착 구민대상 교육, 기업 역량강화교육 2)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 나눔 한마당, 프리마켓(온라인 랜선마켓), 마케팅채널 다각화, 포럼, 연수구사회적경제 소식마당, 체험 및 홍보책자 발행, 홍보존 운영	296,178	

연번	지원 대상	지원현황				비고
		지원 년도	지원 부서	주요사업내용	지원 금액	
				3) 컨설팅 : 사회적기업 인증 전략, 지표 측정 4) 네트워크 : 선진기관 벤치마킹, 홍보비(웹자보), 사회적 경제 나눔페스티벌		
			▲▲▲	<사업명 : HHH> 1) 생활문화공간 : 동아리 및 프로그램 참여 지역민 무료 대관 등 2) 요리조리 : 건강 식재료 활용 계절음식 만들기, 장담그기 등 3) 자존감 형성 : 자존감 회복을 위한 워크숍, 진로선택을 위한 다양한 경험 공유, 천연염색을 통해 창의성 개발 체험 프로그램 4) 메이킹 쿠키 : 엄마와 자녀 쿠키 등 만들기 5) 건강지킴 : 쉬운 건강 생활법, 혈액순환을 통해 피로 회복 등	12,000	
				소 계	449,612	
				총 계	1,082,673	

○ 각 보조금관련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는 물론 연수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관성 있는 세부기준 마련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09.06.)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중복 수급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03.30.)에 명시된 유사·중복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03.30.) 중 일부 발췌

Ⅲ.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대상

[4] 지원 제외대상 (예산편성기준)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6] 지방보조사업의 관리 (법 제32조의2, 제32조의7, 영 제37조, 제37조의4)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IV.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법 제32조의2, 영 제37조)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교부하기 전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한다.
- 그러나 금번 감사를 통해 각 부서별 보조금 교부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표1]과 같이 사업내용을 불문하고 각 부서에서 동일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다수의 단체가 중복수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 또한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된 사업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른 유사·중복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유사·중복의 개념	
(정 부)	동일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여러 부처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
(감사원)	둘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핵심 속성들이 전반적으로 동일하여 중복성이 높은 경우
(국 회)	사업목적, 내용 및 지원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통·폐합 검토가 필요한 사업

- 상기에 명시된 유사·중복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각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타 공모사업 보조금 중복 지원 여부 및 배제사유 조회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동일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보조금사업은 배제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부서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표2]와 같이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선정·추진함으로써 동일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복수혜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앞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표2]과 같이 동일단체 중복 수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신청 제한 요건을 강화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 및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공모사업 관련 유사·중복사업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공모사업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연수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aaa 등 11개 단체를 대상으로 [표1] 현황과 같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지방보조금 150,193천원과 150,853천원을 교부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사업 종료 후 이를 정산하였다.

[표1] 2020~2021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2020		2021	
	금 액	개 수	금 액	개 수
계	150,193	33개 사업	150,853	28개 사업
aaa	59,588	8	58,654	6
bbb	23,800	4	23,875	4
ccc	23,470	5	25,350	5
ddd	19,810	4	18,970	3
eee	4,365	2	4,732	2
fff	3,250	2	2,750	2
ggg	4,320	3	4,245	2
hhh	3,920	1	4,542	1
iii	2,060	2	1,500	1
jjj	2,910	1	2,960	1
kkk	2,700	1	3,275	1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하였을 때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과는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때에는 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지방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과는 ddd가 2021년에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표2] 현황과 같이 행사 당일에 사용한 현수막과 참가자 식대, 다과비에 대한 지출품의일자와 보조금 인출일자가 행사 이후인 2021. 6. 23.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대로 정산을 확정 한 사실이 있다.

[표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적 요	금 액	사업일자	품의일자	인출일자
보조금	입장료	영화관입장료	891,000	2021.6.22.	2021.6.21.	2021.6.21.
보조금	다과비	콜라	247,500	2021.6.22.	2021.6.21.	2021.6.21.
보조금	식대	도시락	792,000	2021.6.22.	2021.6.23.	2021.6.23.
보조금	인쇄비	현수막	50,000	2021.6.22.	2021.6.23.	2021.6.23.
보조금	다과비	음료수	99,000	2021.6.22.	2021.6.23.	2021.6.23.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그 지방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 작성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보조금 정산

검사 결과에 의하면 [표3] 현황과 같이 aaa가 추진한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지출품의 따른 회계처리 규정 위반으로 2018년 10건, 2019년 2건, 2020년 22건, 2021년 19건을 지적하고 주의 조치하였다.

[표3] 2018~2021 사후품의(행사일 이후 대금 지출) 지적사항 현황

(단위 : 건)

연 도	단체명	사업명	지적건수	지적내용	처 분
2018	aaa	◆◆	6	사후품의	주의
		□□	4	사후품의	주의
2019	aaa	◆◆	1	사후품의	주의
		□□	1	사후품의	주의
2020	aaa	□□	3	사후품의	주의
		■ ■	19	사후품의	주의
2021	aaa	□□	3	사후품의	주의
		■ ■	16	사후품의	주의

- 그러나 ○○○과에서는 같은 단체가 4년간 총 47건의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회계 교육이나 성과평가 반영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없이 정산검사 시 연례·반복적으로 주의만 통보함으로써 주의사항에 대한 개선 없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정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는 2021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3개 분야에 따라 8개 항목으로 실시하였다.
- 2021년 AAA에서 추진한 ◇◇사업은 당초 탈북민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영화관에서 탈북민과 장애인을 분리하여 앉히고 식사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단체 식사가 제한되어 개별 대상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됨으로써 단순히 수혜자에게 영화감상과 도시락을 지원한 사업으로 변경되어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사업대상자 명단에 수혜자를 중복으로 기재하거나 장애인, 탈북민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성명을 나열하고 서명, 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정확한 수혜자 확인이 불가하였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표1]과 같이 ◇◇사업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

[표1]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체명	사업명	평가등급	평가점수	비 고
AAA	◇◇	우수	90	
	□□	우수	89	
	△△	부진	35	

-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실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 실시 계획」 기획예산실-7781 (2021.05.26.시행)을 수립하여 3년(18년~20년) 지속 사업 47건에 대하여 유지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각 단체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 사업내용이 유사·중복인 경우 사업을 통합하거나 일몰시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평가항목에 이를 반영하였다.
- 그러나 ○○○과에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유지필요성 평가」를 위하여 [표 2]과 같이 1차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과에 의하면 유사·중복 사업임에도 평가점수를 과다하게 매기거나 해당 평가항목에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유사·중복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실이 있다.

[표2]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유지필요성 평가결과

단체명	사업내용	전체 평가점수	평가항목 (착안사항)	항목별 점수	보조금		
					2019	2020	2021
BBB	김치 나누기	98점	타사업과 유사중복사업 존재여부, 통합필요 여부 (5점)	4	8,200	8,200	13,940
CCC	김치 나누기	97점		5	4,000	4,000	5,000
BBB	김장김치, 밑반찬 지원	-		-	23,000	23,000	22,400
DDD	밑반찬 나누기	97점		4	2,050	2,050	2,750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 자기부담금 신청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따르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시행」에 따르면,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2]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법 제32조의 2, 영 제37조)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이하생략)

○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

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시행」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따르면,

-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에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이하생략)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8조(지방보조금 신청)에 따르면,

-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4. 자기자금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② 제①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이하생략)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고 규정되어 있다.

- 상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지원 단체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자기자금부담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0년 ~ 2021년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지원 시 자기부담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접수받았고 신청금액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 특히, 2020년 □□□ 사업의 경우, [표1]과 같이 자기부담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 보조금으로만 신청한 사업이 3건이었으며, 자기부담금을 일부 신청한 사업의 경우도 각 단체별로 3% ~ 17.7%까지, 모두 상이한 비율로 신청하였다.

[표1] 2020 □□□ 사업 자기부담금 신청·집행 현황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AAA	aaa	4,500,000	4,500,000 (100%)	- (0%)	2,800,000	-
BBB	bbb	6,180,000	6,180,000 (100%)	- (0%)	6,180,000	200,000
CCC	ccc 외 2개사업	5,060,000	5,060,000 (100%)	- (0%)	5,060,000	-
EEE	ddd 외 1개사업	5,937,000	5,757,000 (97%)	180,000 (3%)	5,729,700	180,000
FFF	eee	4,256,000	3,506,000 (82.3%)	750,000 (17.7%)	3,506,000	740,740

- 그리고 2021년에는 [표2]와 같이 자기부담금 없이 신청한 사업은 없으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 각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적게는 1%, 많게는 16.3%의 자기부담금을 신청함으로써 단체별 제각각의 비율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

[표2] 2021 □□□ 사업 자기부담금 신청·집행 현황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GGG	fff 외 1개사업	2,980,000	2,710,000 (90.9%)	270,000 (9.1%)	2,692,000	270,000
HHH	ggg 외 1개사업	3,500,000	3,100,000 (88.5%)	400,000 (11.5%)	3,100,000	363,300
III	hhh	7,700,000	6,800,000 (88.3%)	900,000 (11.7%)	6,800,000	900,000
EEE	iii 외 1개사업	4,505,000	4,090,000 (90.7%)	415,000 (9.3%)	4,090,000	415,000
JJJ	jii	2,160,000	1,890,000 (87.5%)	270,000 (12.5%)	1,540,000	266,000
KKK	kkk 외 3개사업	4,900,000	4,430,000 (90.4%)	470,000 (9.6%)	4,349,400	456,580
LLL	lll	2,760,000	2,450,000 (88.7%)	310,000 (11.3%)	2,400,500	285,990
MMM	mmm	5,362,000	4,872,000 (90.9%)	490,000 (9.1%)	4,680,100	420,220
CCC	nnn 외 2개사업	5,500,000	4,950,000 (90%)	550,000 (10%)	4,950,000	550,000
NNN	ppp	8,106,000	7,246,000 (89.3%)	860,000 (10.7%)	7,246,000	530,000
OOO	ooo	4,300,000	3,600,000 (83.7%)	700,000 (16.3%)	3,600,000	500,000

○ 또한 2020년, 2021년 『△△△사업』의 경우에도 [표3] 현황과 같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든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액 보조금만으로 진행하였다.

[표3] 2020년, 2021년 △△△ 사업 현황

(단위 : 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020	●●●	○○○	6,512,000 (100%)	- (0%)	6,053,900	-
		◀◀◀	11,754,000 (100%)	- (0%)	9,874,810	-
		▷▷▷	3,157,000 (100%)	- (0%)	5,400,000	-
	◆◆◆	▶▶▶	6,946,000	- (0%)	5,400,000	-
		◁◁◁				
	■ ■ ■	♠ ♠ ♠	16,934,000	- (0%)	13,382,090	-
		♡♡♡	21,269,000	- (0%)	15,998,520	-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021	●●●	♥♥♥	11,150,000	- (0%)	10,326,870	-
	◆◆◆	♠♠♠	8,981,000	- (0%)	3,912,650	-
		♣♣♣				
	★★★	♣♣♣	16,260,000	- (0%)	15,429,220	-
	▲▲▲	○○○	16,100,000	- (0%)	16,098,860	-
	▼▼▼	◆◆◆	10,536,000	- (0%)	9,534,680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시행」에 따르면,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시행」 제15조(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에 따르면,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표4] 현황과 같이 2020 ~ 2021년에 추진된 ‘□□□ 사업’의 4개 사업은 사업예산 중 보조금은 전액 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은 일부 집행하는 등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다.

[표4] 자기부담금 신청·집행 상이현황

(단위 : 원)

연도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2020	NNN	mmm	4,604,000	3,874,000 (84.1%)	730,000 (15.9%)	3,874,000	497,730
	KKK	qqq	1,785,000	1,625,000 (91%)	160,000 (9%)	1,625,000	135,800
2021	HHH	ggg 외 1개사업	3,500,000	3,100,000 (88.5%)	400,000 (11.5%)	3,100,000	363,300
	NNN	mmm	8,106,000	7,246,000 (89.3%)	860,000 (10.7%)	7,246,000	530,000

- 이에 ○○○과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의 사정상 교부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코자 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변경 내용에 대해 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변경 집행한 경우 ‘지방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여야 했다.

- 그러나 ○○○과에서는 관련 근거를 따르지 않은 채 정산보고를 받았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과에서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0 운영계획에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최소 20% 기관 대응투자 필수, 자부담 계획의 80% 이상 집행 필수’를 명시하였다.
- 그러나 [표5] 현황과 같이 2020년에 추진된 4개 사업은 사업예산 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자기부담금을 집행하였으며, 자부담 계획의 80%미만을 집행하였다.

[표5] ‘2020년  사업’ 자기부담금 신청·집행 상이현황 (단위 : 원)

기관명	사업명	교부신청 내역			집행액	
		총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	@@@	4,006,000	2,860,000	1,146,000	2,732,000	102,000
●●●	###	3,350,000	2,500,000	850,000	1,300,000	55,000
	\$\$\$	2,897,000	2,297,000	600,000	1,257,000	109,960
●●●	%%%	3,800,000	3,000,000	800,000	1,699,760	320,000

- 이에 ○○○과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였어야 했으나 해당 사업들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의 ‘자부담 예산의 집행을’을 ‘적합’으로 평가하고, 이후 반환조치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사업별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원 단체에 대한 명확한 자기부담금 집행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숙지하시어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권고)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하함)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단)과에서는 <◇◇◇ 행사>가 평생학습 분야 지구촌 대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국내 평생학습 역량을 결집하고, 전국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수구 평생학습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1 ◆◆◆
사업』을 계획하여 민간보조 형태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략)

5.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이에 ○○○(◇◇◇단)과에서는 『2021 ◆◆◆ 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6. 21.(월)부터 6. 30.(수)까지 보조사업자를 모집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지원목표 기관수 미달 접수로 7. 16.(금)까지 공모 기간을 연장하여 최종 19개 기관(단체)이 접수되었고 이중 6개 기관(단체)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그러나 ○○○(◇◇◇단)과에서 수립한 최초 공모 계획인 『2021 ◆◆◆ 사업 공모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절차를 1단계 부서 및 자문위원 심사, 2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원 목표 기관수 미달로 『2021 ◆◆◆ 공모 접수 결과보고 및 연장공고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1단계 부서 검토, 2단계 실무위원회 심사로 심사절차를 변경하여 보조사업자를 심의·선정한 사실이 있다.

[표 1] 2021 ◆◆◆ 제안사업 심사 절차

구 분	최 초		변 경	
	단 계	내 용	단 계	내 용
1단계	부서 및 자문위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부서	사업수행능력 예산편성의 적정성
2단계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 결정 및 사업비 조정	부서 자체 실무위원회	사업계획의 적정성

-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 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에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교부결정 및 교부 전 사전 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자부담이 있는 경우)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전 확인) 보조금 통장(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 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교부결정)에 따르면 “제19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단)과에서는 당초 계획에 “자부담 편성을 심사기준에 반영은 하나 의무사항으로 정하지 않음” 이라는 무의미하고 모호한 자부담 편성기준으로 인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동일한 사업유형을 신청한 보조사업자임에도 자부담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사업비 편성기준으로 “동일한 항목의 예산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 나누어 편성 불가”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과 자부담에 동일한 항목의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었지만 변경·수정 없이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사업자별 자부담 편성현황

연 번	공동체명	사 업 명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재원별 동일항목 중복 편성내역)
1	AAA	aaa	보조금 미지급		
2	BBB	bbb	1,500	220	강사비
3	CCC	ccc	1,500	138	소모성물품비
4	DDD	ddd	1,500	1,000	
5	EEE	eee	1,500	0	
6	FFF	fff	1,500	1,260	소모성물품비
7	GGG	ggg	1,469	237	홍보비
8	HHH	hhh	1,500	0	
9	III	iii	1,500	1,000	홍보비
10	JJJ	jjj	5,000	300	소모성물품비
11	KKK	kkk	5,000	1,000	식비
12	LLL	lll	5,000	0	
13	MMM	mmm	10,000	7,500	
14	NNN	nnn	9,804	1,000	
15	OOO	ooo	9,680	0	
16	PPP	ppp	8,874	426	

-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신청기관(단체)의 성격, 주요사업 이력, 동일한 공모분야에 단체별 중복사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나 아래 [표 3]과 같이 전통문화 중 하나인 범패와작법무에 관련된 유물, 국내외 불교의식범구 및 민화를 전시하는 기관(단체)이 전통문화 기획공모 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성격과 맞지 않은 사업유형에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 2021 ◆◆◆ 보조사업자 현황

공동체명	주요사업(이력)	선정사업		
		분 야	사 업 명	사업내용
LLL	전통문화 범패소리·무용 배워 보기, 법사물을 연주하기, 민화 원목상자 만들기 등	기획공모(SDGs)	생명과 삶이 흐르는 길	체험키트를 통한 물순환 체험

- 또한 전통문화 기획공모에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아래 [표 4]와 같이 세부사업으로 한복체험 사업과 달고나사업을 중복으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보완·수정 등 별다른 조치 없이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표 4] 2021 ◆◆◆ 중복사업 현황

연 번	공동체명	사 업 명	세부사업 내용
1	MMM	mmm	전통염색 체험, 한복모양 아이싱 쿠키 만들기, 달고나 체험, 전통한복 전시 및 체험
2	NNN	nnn	공예(노리개만들기) 체험, 한복체험, 다례체험
3	OOO	ooo	전통 한복체험, 전통 예절체험, 전통 떡메치기 체험, 전통 달고나 체험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보조사업 추진 시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단계까지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프로그램 운영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조례 제18조(지방보조금 신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 5. 보조사업 기간
 -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그리고 ○○○과의 「2021 ○○○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의 교육 참여 대상은 연수구민에 한하여 모집·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사업대상 및 인원에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외 지역주민 25명’ 으로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프로그램 세부 계획서에 첨부한 홍보물에도 신청자격을 ‘연수주민’ 으로 명시해 놓았다.

-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자와 관련하여 총 수료인원 16명 중 2명의 관외 주민이 포함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2021년 ○○○ 프로그램 지원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의 세부 정산검사 내역의 ‘수강생 모집 홍보’ 항목에 [표 1]와 같이 ‘적정’ 으로 평가를 한 사실이 있다.

[표1] 「2021년 ○○○ 프로그램 지원 운영」 보조금 정산검사 내역

점검항목		검사기준	결과
교육과정 운영	수강생 모집 및 홍보	-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업」에 한하여 프로그램 홍보 - 연수주민에 한하여 모집, 구성 등	적정
	교육과정 구성	- 강사, 강의 내용 구성, 진행방법 등	적정
	사업계획 대비 집행결과	- 사업신청 시 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적정
예산 집행	자체부담 비율 준수	- 보조금 신청 시 단체 자체 부담비율 준수 여부	미준수 (선학동, 연수2동)
	당초 보조금 신청 목적에 해당 여부	- 보조금 신청 시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 여부	적정
회계 분야	다른 비용과 혼용사용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여부	적정
	지출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지출증빙 서류를 잘 구비하였는지	적정
	적정 집행 여부	- 구입, 지출 시 단체장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 사업 활동 시간과 카드결제 시간이 맞는지 -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였는지 -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지출하였는지	적정
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였는지	적정

【처 분 요 구】

- ○○○과장은 각 단체의 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을 준수하여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라며, 정산검사 및 사업결과 보고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권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단)에서 수립한 『2021 ◆◆◆ 공모계획』에는 사업비 편성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강사비의 경우 기준 금액을 [표1]과 같이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 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함.
 - 사업비는 다음의 편성 기준표에 따라 편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지원 사업비는 사업활동목적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식비, 강사비, 단순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이하 생략)

[표1]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비(일반1~3급) 지급기준

구분	지급대상(전·현직)		지급기준	
	공공분야	민간분야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1급	○ 4급 이상 공무원 ○ 대학(교) 교수 ○ 지방의회의원 ○ 공직유관단체 임원 ○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 언론인 ○ 각급 학교의 교장	○ 유명 예술인·종교인 ○ 기업·기관·단체 임원 또는 중역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박사학위 소지자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25	10
일반2급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교) 전임강사 ○ 공직유관단체 직원 ○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원 ○ 각급 학교의 교직원	○ 중소기업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외국어 원어민 강사(관련학과 석사학위 또는 Tesol 자격증 소지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15	7
일반3급	○ 대학(교) 시간강사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취미, 소양 등 강사 ○ 기타 상기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	5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 그러나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상자별 기준 금액과 시간당 지급금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과는 강사비에 대하여 1일 최대 지급 가능금액, 1일 최대 강의시간 등 세부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지급기준을 통일하고 예산 낭비를 예방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래 [표2]와 같이 실제 강의시간이 아닌 체험부스 운영시간으로 강사비가 책정·지급되어 동일한 조건의 타 보조사업자 보다 강사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게 한 사실이 있다.

[표2] 보조사업별 강사비 지급현황

연번	보조사업자	지출내용	수량	단가	지출금액 (부가세 포함)	비 고
1	AAA	강사비	2일	450,000 (8시간)	900,000	체험부스 운영 시간 적용
2	BBB	강사비	2일	150,000 (2시간)	300,000	실제 강의시간 적용
3	CCC	강사비	7일	150,000 (2시간)	1,050,000	실제 강의시간 적용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강사비 지급기준을 수립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권고)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사업 예산낭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 상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지원 단체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자기자금부담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1년 ~ 2022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2021년 15건, 1억5백만원, 2022년 24건, 1억5천8백만원)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동네청소, 꽃심기 사업, 단순홍보 등 ◇◇◇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단순사업(2021년 7건, 3천7백만원, 2022년 8건, 2천7백만원)을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021년 ~ 2022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2021년 5건, 5천4백만원, 2022년 7건, 6천2백만원 등 총 12건, 1억1천6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이 1회성 행사경비로 지출이 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2021년, 2022년 2년간 동일·반복적인 사업이 11건으로 과도한 보조금 지원으로 동일·반복사업이 남발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이에 ○○○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당초 취지와 맞지 않은 ◇◇◇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배정으로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 사업 예산편성 시 구의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구 사업과 유사사업, 단순사업, 1회성 행사, 동일·반복사업 선정 등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가치지향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업 위주로 선정하여 예산 절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사업 성과 및 효과성 등 재검토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과는 2020년, 2021년 2년 간 ◆◆◆ 사업계획을 수립 후 관내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모임)을 대상으로 마을의제를 단체 스스로 발굴·실행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형성·회복하는 취지의 ◆◆◆ 사업을 시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시행하여 심의를 거친 후 2020년 총 37개 단체(모임), 2021년 총 62개 단체(모임)에 대하여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가 이뤄졌다.
-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이번 특정감사 기간 중 “◆◆◆ 사업” 현황 및 처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 ◆◆◆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2021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관내 동일한 지역에 구성원 중 70% 이상이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상가 등)을 영유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모임)’ 이라고 되어 있다.

- “◆◆◆사업”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관련조례에 따라 사업대상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선정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이번 감사 기간 중 조사결과 지원신청서 상 사업대상 요건(관내 동일한 지역에 구성원 중 70% 이상이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한 존재하지 않아 사업대상 요건 확인 시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는 점이 확인되어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요건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마을의제 등 ◆◆◆ 성과 및 효과성 불분명

- 2020년 및 2021년 “◆◆◆계획” 에 따르면, 연수구 관내 단체(모임)이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 및 회복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형성지원, 활동지원, 서로잇기 등 각 분야별 활동 내용에도 마을의제 발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 사업계획서 상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을 심사하여 주민편익실현 및 공익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지 여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으며, 2021년 계획에 따르면 단순 취미활동, 동호회 활동, 단순 교육강좌, 단순 반복사업 등은 경우 신청 제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과에서는 해당 사업의 공모를 통해 지원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문화를 형성·회복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 주민편익실현 및 공익성과 해당 사업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심사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표1]과 같이 연도별 ◆◆◆ 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2021년에는 2020년에 비해 선정된 대상자 수가 약 82% 정도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1] ◆◆◆사업 지원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신 청	36	54	67	77	
선 정	31	37	62	77	

- 그러나 ◆◆◆사업의 계획과 실제로 수행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표2]와 같이 마을의제 또는 주민편익실현, 공익성과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 다수가 확인되었다.

[표2] 마을의제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현황

연 번	연 도	단체(모임)	집행금액 (원)	설정 의제
				주 활동내용
1	2020	AAA	252,900	· 동네청년 네트워킹 및 자기계발 고취
				· 연애, 자산관련 책모임, 강사 초빙 특강 진행 ☞ 자체설정 의제와 활동내용 모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2	2020	BBB	823,750	· 아파트 입주민의 소통, 화합 계기 마련 · 남녀노소 배려, 공감할 수 있는 아파트문화 마련
				· 핸드드립 커피체험, 핸드워시 만들기, 부채만들기 강의 등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3	2020	CCC	1,431,500	·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단합,배려하는 문화 확산
				· 쿠킹클래스, 바리스타체험학습 강의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4	2020	DDD	4,672,000	· 그림을 통해 주민과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 · 그림그리기를 통해 개인의 내면을 치유
				· 그림그리기 강좌로 구성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연 번	연 도	단체(모임)	집행금액 (원)	설정 의제
				주 활동내용
5	2020	EEE	3,421,200	· 아파트 주민 공동체 활성화
				· 골프, 탁구, 피트니스 강의 ☞ 아파트 자체 커뮤니티시설을 보조금을 통해 운영
6	2021	FFF	1,314,400	·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살리기 인식 공감 · 이웃들과 공동체활동을 통해 지구환경살리기
				· 친환경 비누만들기 강좌 4회 실시 ☞ 단순 공예강좌 성격으로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7	2021	GGG	2,999,500	· 마을 사랑방 역할로 소통의 장 형성 · 자연과 연관된 공예활동
				· 수첩만들기, 바구니만들기, 압화 액자만들기 등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8	2021	HHH	2,113,400	· 열린강좌 등 청년들의 공간 마련 필요 · 청년들과 소통
				· 기타강좌 및 영어강좌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취미활동 및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이며, 매 강의 당 동일한 4~6명의 구성원만 참석하여 사업의 효과 또한 저조함
9	2021	III	2,999,980	· 코로나 시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인형극을 만들어가며 유대감 강화
				· 인형극 제작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인형극 제작이 주 활동내용
10	2021	JJJ	4,827,420	· 그림을 통해 이웃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 형성
				· 그림그리기 강좌로 구성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총 16회의 진행과정에서 내부인 2명을 제외하면 매회 동일한 인원 3~5명 참석으로 예산 투입대비 성과가 너무나 미약함
11	2021	KKK	546,800	·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다문화 아이들의 참여 유도 · 문학산 환경보존을 위한 정화활동
				· 문학산 환경보존활동 ☞ 당초 계획한 유소년 축구교실의 경우 24회 계획에서 8회로 변경하였으나 미추진하였고, 문학산 환경보존 활동은 당초 6회 계획이었으나 2회만 시행하였으며 1회 3명 참석, 2회 6명 참석으로 매우 저조하였음. ☞ 저조한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사업추진 평가회를 시행하며 불필요한 강사료 1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해당 강의내용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 또한 미첨부

연 번	연 도	단체(모임)	집행금액 (원)	설정 의제
				주 활동내용
12	2021	LLL	4,984,040	· 아파트 내 관리팀과 입주민과의 화합증진 · 주민모임 활성화를 통한 마을 갈등 축소
				· 민화 강좌 및 셀프인테리어 DIY강좌 ☞ 마을의제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이며, 특히 셀프인테리어 DIY강의의 경우 소모품 구입을 통해 입주민 집 내부를 수리하는 내용으로 마을의제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13	2021	MMM	4,999,950	· 내외국인과의 소통을 통한 이해의 공동체 구성 · 다문화 이해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 구성
				· 전통문화 체험교육(직물염색, 전통음식 만들기) · 함박마을 내 고려인과의 문화교류(직물염색) · 외국인 참여는 총 7회 중 1회(4명)이며 그 외에는 내국인 대상 강좌 진행 (함박마을 방문 시 고려인센터에서 고려인 11명) ☞ 대부분 사업이 내국인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설정 의제 달성 불가
14	2021	NNN	952,000	·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의제발굴 · 젊은층과 노인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제발굴
				· 어르신과 만나는 원예코칭 (모종심기, 방향제 만들기 강좌) ☞ 당초 사업계획 상의 마을의제(젊은층과 노인층이 함께 할 수 있는 의제 발굴) 취지와는 맞지 않는 단순 강의로만 구성된 사업 활동내용
15	2021	OOO	919,000	· 초보에서 탈출 누구나 연주자. 버스킹 주인공 나의 재능이 마을과 소통하다
				· 바이올린, 첼로 강좌 ☞ 당초 사업계획(강좌를 통해 실력향상 후 주민초청음악회, 코로나 상황 등 곤란할 경우 랜선음악회 대체)과는 달리 모임 소속 구성원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하여, '형성지원' 분야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 활동임
16	2021	PPP	725,000	· 힐링을 통한 도시 농부 · 따뜻하고 소통하는 이웃 만들어보는 의제 발굴
				· 독서토론, 수중식물 강좌, 요리 강좌, 꽃차 만들기 ☞ 텃밭을 통해 수확한 작물을 이용한 사업 활동 및 관련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내용 임의 변경(사전 승인 받지 않음)으로 사업과 관련없는 양금케이크 만들기로 변경하여 활동함, 사업계획 당시 기존 모임 인원(5명)만으로 활동하여 '형성지원' 분야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 활동임.

- 이에 지원대상은 [표1]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주민 모임이 기존 모임의 활동비 지원처럼 보이는 강좌 운영 등 단순한 동호회 지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동의 문제를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인 마을공동체 형성’이 되지 않았다.
- 위와 같이 마을의제 또는 주민편익실현, 공익성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단체(모임)의 사업에 대하여 심사 후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사용 대비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지 못하였다.

3. 마을의제 달성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사업 활동 집행

-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모사업 심사 후 선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단체(모임)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마을의제의 달성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일부 단체(모임)에서는 마을의제 달성과는 관련없는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3]와 같다.

[표3] 마을의제와 관련성 없는 사업 집행내용

연번	연 도	단체(모임)	집행금액(원)	지적사항
1	2020	QQQ	48,500	· 지출결의 62호 - 구성원 상호 간 자체적인 사업평가 워크숍 진행 시 타로강사 초빙을 통한 불필요한 강사비 지출
2	2021	RRR	150,000	· 지출결의 29호 - 구성원 상호 간 자체적인 사업평가 워크숍 진행 시 타로강사 초빙을 통한 불필요한 강사비 지출하였으며,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기록 또한 없음
3	2021	SSS	150,000	· 지출결의 17호 - 구성원 상호 간 자체적인 사업평가 워크숍 진행 시 미술치료 강사를 초빙하여 불필요한 강사비 지출하였으며, 해당 강의 내용에 대한 기록 또한 없음
4	2021	TTT	80,000	· 지출결의 21호 - 선진지 견학 워크숍 시행 시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통역 강사비 지출
5	2021	UUU	260,890	· 지출결의 20호 - ‘냉장고지도 만들기 2-천연수세미 만들기’의 경우 당초 해당사업의 목적인 ‘냉장고를 비움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냉장고 지도만들기 사업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변경 등 조치 없이 진행
6	2021	QQQ	150,000	· 지출결의 48호 - 구성원 상호 간 자체적인 사업평가 워크숍 진행 시 타로 강사를 초빙하여 불필요한 강사비 지출

- 위 [표3] 현황과 같이 당초 설정한 마을의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업을 집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해당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및 효과성 등 측면에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보조금 사업 진행 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업 관련 조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시고, 마을의제의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업은 실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주의)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4,090원 추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에 대한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실적보고), 제26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산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이에 “◇◇◇”의 정산검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 회계처리 부적정 현황

연 번	연 도	단체(모임)	지적사항
1	2020	AAA	· 지출결의 11,12호 - 단체 내부자에게 강의 진행보조 인건비 지출 (a, b에게 각 80,000원)
2	2021	BBB	· 지출결의 62,63호 - 리플릿 및 현수막 제작 후 시안 또는 게첩사진 등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3	2021	CCC	· 지출결의 2호 - 강사수당 124,000원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미신고 하였으나, 해당 강사는 c 소속 강사이므로 사업소득신고 대상으로 3.3% 원천징수하여야 함

연 번	연 도	단체(모임)	지적사항
4	2021	DDD	· 지출결의 7,12,13,15호 외 다수 · 지출결의 시 사전품의 원칙 위반
5	2021	EEE	· 지출결의 20호 · 계좌이체 거래 시 거래명세서 누락
6	2021	FFF	· 지출결의 3,6호 · 밀키트 배송처 및 명단 등 참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 사업비 조정 등 사업비의 10% 이상 변경, 사업 내용 변경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 해당금액 반납 조치 미이행 ☞ ① 사업비 10% 이상 변경 : 자체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승인 없이 조정 ② 사업내용 변경 : 맛집탐방 대체 → 마음나눔 프로그램
7	2021	GGG	· 사업내용 변경 사전 승인 절차 미이행 · 지출결의 1호 · 참여자명단 누락 · 지출결의 3호 · 마을의제 및 사업목적·내용(사업명 : 경험하고 나누고 힐링하는 도시농부 / 식물 및 재배 등 관련 도서 구입 필요)에 맞지 않는 도서구입(구입도서명 : 마음약국)
8	2021	HHH	· 지출결의 1호 · 모종구입 관련 참여자명단 등 증빙서류 미비
9	2021	III	· 정산검사 시정조치 사항 미확인 · 사업 추진에 따른 출판 결과물 1부 제출 미확인

- 「2020년 ◇◇◇ 공모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의 회원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강사료는 지급이 금지되어 있으며,
- 「2021년 ◇◇◇ 보조금 집행 안내서」에 따르면 현수막 등 홍보비 사용 시 계첩사진 및 제작 결과물을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강의에 대한 강사비 지출 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3.3%를 원천징수 후 소득신고 하여야 하고, 세부 사업 간 사업비 이전, 사업 내용 변경, 사업비 조정 등 사업내용 변경 시 변경 10일 전에 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받지 않거나 승인 전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조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계좌이체 할 경우 이체 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또한 모든 지출결의서 작성 시 사업비 집행마다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결정 의사가 확정된 후 지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과는 ◇◇◇사업을 수행한 단체(모임)에서 [표]와 같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정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정산검사를 부실하게 완료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표] 연번 3의 강사수당 124,000원에 대하여 징수 누락된 원천징수세액 4,090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시고, 연번 9의 출판 결과물을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시 실적보고서에 첨부된 증빙자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한 경우 보완 요청 등의 조치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보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간위탁 사전 절차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는 A공원, B공원, C공원, D공원 4개소에 신규 건립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으며, 2020년 제236회 연수구의회(정례회)

의결(' 20.12.07.)에 따라 최종 결정되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라고 조항에 명시하여 민간위탁을 하기에 앞서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
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사항을 고려하시어 ◇◇◇ 위탁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시기 바라며,(시정)
- 향후 민간위탁 업무처리 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을 숙지하시어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 서·기 관 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보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위탁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보조사업자와 공원 내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4개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나 그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1. 도서관 운영규정의 제·개정
 - 2. 운영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
 - 3. 운영인력 보수에 관한 사항.
 - 4. 기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12조에 따르면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A공원 작은도서관 수탁기관인 ☆가 2021년 8월 2일 제출한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편성한 인건비 항목과 달리 직책보조비라는 새로운 인건비 항목을 신설하여 운영인력 2명을 대상으로 5개월 동안 총 1,875천원 (375천원×5개월)을 지급하였고 휴관일을 당초 월요일, 화요일에서 일요일, 월요일로 변경하거나 운영인력에 대하여 탄력적 근무제를 적용하는 등 위탁 업무를 사전협의 없이 변경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탁계획 변경이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021년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A공원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시기 바라며, (시정)
- 관련규정, 협약내용 등을 숙지하시어 향후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 서·기 관 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보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민간위탁금 정산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는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소의 수탁기관과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 협약서」를 체결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였다.
- 각 수탁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서 제10조에는 수탁자는 사업비에 대해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주무관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 내 작은도서관 4개소에 교부한 위탁금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매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21사업연도의 경우
A공원 작은도서관과 B공원 작은도서관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도점검으로 갈음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정산검사를 누락한 2021년 A공원, B공원 작은도서관 민간
위탁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기 바라며,(시정)
-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에 따라 매 분기별로
민간위탁금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관련자 ●●●에게는 훈계 처분합니다.(주의)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 이라함)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보조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중략)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설치)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략)

5.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제1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중략)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과는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지역독서문화 창조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결속력 강화하고자 ◇◇◇사업을 계획하여 매년 민간보조 형태로 지방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현황과 같이 2020년, 2021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0년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를 근거로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2020년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에 참여한 작은도서관이 보조사업에 신청할 경우 별도 심의절차 없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였다.

[표]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현황

구분	보조사업자	지원액	집행액	사업내용	사업실적
2020	18개 도서관	39,994	35,599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및 방역물품비 지원	총 56강좌 364회, 2,537명 참여
2021	14개 도서관	35,225	34,081	작은도서관 도서를 택배로 대출하고 독서 온라인 인증 및 비대면 강의 운영	총 40강좌 204회, 3,942명 참여

○ 연수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구의 재정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구청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자문기관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체할 수 없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유사·중복성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부서 자체심의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과는 2020년과 2021년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기준 등을 숙지하시어 업무를 철저히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174,410원 추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강사수당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강연료, 인건비,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 제37조 및 영 제84조에 따라 강연료, 인건비, 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율은 받은 금액의 60%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84조제3호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여 [표1]과 같이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규정하고 있다.

[표1] 기타소득(강사료)의 과세최저한

구 분	2018. 1.~ 3.	2018. 4.~ 12.	2019. 이후
지급액(과세최저)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 이에 따라 강사료, 인건비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과세최저한인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에서는 생활밀착형 지역독서문화 창조와 지역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매년 민간보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강사 등을 섭외하여 일정기간 동안 주민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형태의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 그러나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표2]와 같이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강의나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한 대가가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174,410원의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과에서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강사료 원천징수세액 미납현황

연 도	보조사업자	지급액	원천세액	소득구분	비 고
계		2,094,500	174,410		
2020	AAA	1,430,500	125,880	기타소득	aaa, bbb 강사료
2021	AAA	84,000	7,390	기타소득	ccc(7월) 강사료
	BBB	400,000	35,200	기타소득	ddd, eee 강사료
	CCC	180,000	5,940	사업소득	fff, ggg 강사료(5월)

【처 분 요 구】

- ○○○과장은 [표2]와 같이 징수 누락된 원천징수세액 174,410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시고,(시정)
- 향후 유사·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지방보조사업 정산서류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따라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 등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26조와 제1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 주무관은 ◇◇◇사업이 완료되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업 정산보고를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부주의로 분실함으로써 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또한 2021년 ◇◇◇사업 종료 후 정산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보조사업자와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보고서와 실적보고서 제출을 전자적 형태 및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조금 지출결의서상에 증빙서류까지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정산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관련자 ●●●에게는 훈계 처분합니다.(주의)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과에서 실시한 2021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는 [표]와 같다.

[표] 2021년 지방보조사업 부서자체 성과평가 결과

도서관명	정산결과 지적사항	성과평가				평가등급	비 고
		계	계획	관리	성과		
AAA		95	15	20	60	매우우수	
BBB	1건	90	15	20	55	매우우수	
CCC		95	15	20	60	매우우수	
DDD		95	15	20	60	매우우수	
EEE	1건	70	15	20	35	보통	폐관
FFF		95	15	20	60	매우우수	
GGG	1건	55	15	20	20	매우미흡	폐관
HHH	1건	90	15	15	60	매우우수	
III		95	15	20	60	매우우수	
JJJ		95	15	20	60	매우우수	

KKK	1건	90	15	15	60	매우우수	
LLL		70	15	15	40	보통	폐관
MMM		95	15	20	60	매우우수	
NNN	1건	90	15	15	60	매우우수	

- 그러나 ○○○과는 2021년 보조사업 정산 검사 시 보조금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음에도 지적건수가 미비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고, 코로나19에 따라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희망도서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해주고 온라인을 통하여 독서인증을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전체 도서 대출권수가 6,868권임에도 실적보고서상 온라인 인증 수는 2,807건에 불과해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는 2021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현재 폐관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추진한 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모두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A단체 보조금 지원 및 A단체 전적지 탐방 지원과 관련하여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보조금 지원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하였어야 했으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 사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보조금 예산을 편성·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보조금 지원사업 사전계획 수립 여부

사업 \ 연도	2020	2021	2022	비고
A단체 보조금 지원	X	X	X	※2021년의 경우 2021년 3월에 수립한 「2021년 A단체 지원계획」이 존재하나, 이는 A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보조금 지원금액 변동에 따른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계획으로, 2021년 1월에 교부된 1분기 운영비와 상반기 사업비는 사전 지원계획 없이 집행되었음.

사업 \ 연도	2020	2021	2022	비고
A단체 전적지 탐방	o	x	x	

【처 분 요 구】

- ○○○과장은 보조금 지원 시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시어 보조금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시정(보완)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제 목】 ◇◇◇사업 회계 규정 미준수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과는 ◇◇◇사업 계획을 2021년 3월 수립한 뒤 공모를 거쳐 선정된 7개 단체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38,000천원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1] : 지원사업 현황

분 야	단 체 명	사 업 분 야	지원금(천원)
□□□	AAA	미디어 리터러시	7,000
	BBB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6,000
	CCC	미술 연계 케이크만들기 키트 판매	9,000
	DDD	스몰웨딩, 공연사업	6,000
	EEE	씨앗을 넣은 친환경 마스크 생산	7,000
△△△	FFF	찾아가는 문화예술 전시회	1,500
	GGG	꽃식초 개발 및 제조법 교육	1,500

1. 보조금 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미실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5조(실적보고), 제26조

(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 주무관은 2021년 9월 해당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2021년 10월 19일 각 지원단체로부터 지출증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문서시스템에 접수문서로 등록하였다. 각 단체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지출에 대한 증빙 누락 등 미비한 점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 요구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보조금액을 확정된 사실이 있다.

2.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에 따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 통계목을 편성 및 교부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과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으로 편성 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보조사업자의 기자재,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집행함으로써 회계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실 구매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 보조사업자의 자산취득 현황

단 체 명	자산취득 품목	금 액(원)
DDD	노트북	2,122,727
	광각렌즈	817,964
EEE	노트북	1,526,364
	모니터	723,637
	오븐	178,982
	키보드	153,002
	열풍기	83,855
	전동드릴	183,445
	샌딩기	205,331
	미니그라인더	138,136
	전기인두기	231,818
AAA	카메라렌즈	2,536,118
	고프로	535,455
	sd카드	147,427
	카메라키트	254,700
BBB	컴퓨터(노트북)	1,922,473
	키보드,마우스,프린터	480,000
	모니터	588,182
C	카메라	1,700,000
	컴퓨터	1,800,000
	모니터	584,100
합 계		16,913,716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미준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제10조제6항에 따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제1항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을 별도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제13조제1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과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이 보조금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지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 받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별도의 1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 시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매 지출마다 지출결의서를 사전에 작성 및 결재 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그러나 사업에 참가한 보조사업자들이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에서는 이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지 적 사 항	해당 단체	
지출결의서 미작성	CCC, DDD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예치여부 미확인	7개 단체 전체 해당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DDD	전체 지출 계좌이체 처리
	CCC	5건, 7,885,275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처리
보조금 계좌에 개인 사용내역 혼재	EEE, CCC	

【처 분 요 구】

- ○○○과장은 정산검사를 누락한 2021년 ◇◇◇사업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시정)
- 또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관련자 ●●●에게 훈계 처분합니다.(주의)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 서·기 관 명】 ○○○과

【행정상 조치】 권고,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과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운영 및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였고, 동 조례에 따라 A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 ☆센터 운영 현황

연 도	운영주체	운영방식	운영예산(천원)
2015	ZZZ	용역	45,000
2016	XXX		50,000
2017	FFF		60,000
2018	A		60,000
2019		민간위탁	218,000
2020			264,300
2021			291,541
2022			296,178

○ A가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및 설립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A는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과에 제출하였으며, 분기별로 사업운영 예산 교부신청 및 사업 진행 시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과는 이에 대하여 검토 후 승인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 연수구 ☆센터 운영지침 III.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에 따르면,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게 최소경비로 편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다. 또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과는 A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는지 지도·감독하여 관련 규정에 어긋날 경우 시정지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A는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 및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는 이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예산을 낭비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66] : 지적사항 목록

연 번	일 시	사 업 명	지적사항
1	2020. xx. xx.	fff	타 지자체 주민 대상 예산 집행
	2020. xx. xx.	ggg	
	2021. xx. xx.	hhh	
2	2020. xx. xx.	iii	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3	2020. xx. xx.	jjj	행사 시 참석자 대상 고가 기념품 제작 및 관리 소홀
	2020. xx. xx.	bbb	
	2021. xx. xx.	kkk	
	2021. xx. xx.	aaa	
	2021. xx. xx.	bbb	
4	2020. xx. xx.	eee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준수
	2020. xx. xx.	aaa	
	2021. xx. xx.	ccc	
5	2020. xx. xx.	eee	불필요한 사업 진행
	2021. xx. xx.	lll	

1. 타 지자체 주민 대상 예산 집행

- A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고, 구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온라인 체험영상을 촬영 후 체험을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체험키트를 전달하여 주민이 집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 그런데, A는 연수구민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주민까지도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지자체 주민에게 총 67건의 체험키트를 전달하였다.
- 당초 구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목적과는 맞지 않게 타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체험키트를 전달함으로써 더 많은 연수구민의 참여를 제한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약 1,340,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2. 용역 대가산정 부적정

- A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지자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통해 기업 역량 및 시장경쟁력 강화시키고자 ‘♣♣♣ 과정 온라인교육’을 촬영 후 센터 자체 ■■■ 계정에 게시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3] : ♣♣♣ 과정 온라인교육 내역

연 번	강의제목	강의분량	강의내용
1	nnn	12분 29초	초등학생 대상 창의역량 개발법
2	ooo	11분 2초	

[표 4] : ♣♣♣ 과정 제작비 지급 내역

구 분	지급금액(원)
기획안 제작	150,000
영상 촬영	250,000
영상 편집	400,000
합 계	800,000

- 감사일 현재 ■■■에 게시된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5회에 불과하였으며, 해당 교육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당초 사업목적이었던 사회적기업의 역량 및 시장경쟁력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
- 또한 해당 교육영상을 확인한 결과 전문적인 촬영이나 편집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영상으로 1시간 미만의 강사료(2020년 기준 일반3급 민간강사)인 10만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제작비 과다산정으로 인해 7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

3. 행사 진행 시 참석자 대상 고가 기념품 제작 및 관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또한 동 훈령 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1 마호에 따르면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념품의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이에 따라 A는 각종 행사 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기념품 등을 제작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투명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 그러나 A는 각종 행사 개최 시 고가의 기념품을 제작하여 단순 행사 참석 주민 또는 사회적기업 관계자에게 배부하였으며, 배부에 따른 지급 관리대장 또한 작성하지 않아 과도한 기념품 제작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바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5] : 기념품 제작·배부 내역

연 번	일 시	사 업 명	기념품 내역	단 가(원)	수 량(개)	금 액(원)
1	2020.xx.xx.	aaa	쇼핑카트	55,000	30	1,650,000
2	2020.xx.xx.	bbb	프라이팬 등	55,000	38	2,090,000
3	2021.xx.xx.	kkk	스파출라	13,200	70	924,000
			실리콘뒤집개	10,890	70	762,300
4	2021.xx.xx.	aaa	미니선풍기	24,200	70	1,694,000
5	2021.xx.xx.	bbb	체중계	30,000	60	1,800,000
합 계						8,920,300

4. 예산편성 운영기준 미준수

- 「연수구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행사 시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과의 민간위탁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른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는 숙박비의 경우 1박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A는 행사를 진행하며 민간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1식 8,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숙박은 1인당 1박 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A는 워크숍 및 행사를 개최하며 식사 및 숙박을 제공하였는데 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0] : 기준금액 초과 집행 목록

(단위 : 천원)

연 번	일 시	사 업 명	참가인원	적정금액		실 집행금액		초과 집행금액
				식사	숙박	식사	숙박	
1	2020.xx.xx.	eee	28 (숙박 18)	480	900	5,302	1,228	5,150
2	2020.xx.xx.	aaa	60	480	-	1,650	-	1,170
3	2021.xx.xx.	bbb	29	232	1,450	2,087	1,848	2,253
합 계								8,573

5. 불필요한 사업 진행

- 연수구 ☆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A는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보편·타당하게 최소경비로 편성 및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A는 불필요한 사업추진에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7] : 불필요한 사업 추진 목록

연번	일 시	사 업 명	지적사항	금 액 (천원)
1	2020.xx.xx.	eee	불필요한 대관, 숙박	2,564
2	2021.xx.xx.	lll	성과 없는 사업	10,000

- A는 [표7] 연번 1과 같이 2020. xx. xx. 연수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eee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8] 2020년 워크숍 일정 내역 (장소 : 송도동 오크우드호텔)

날 짜	시 간	내 용
2020. xx. xx.	13:30	B 호텔 집결
	14:00	사회적경제 강의
	16:00	체험활동
	17:00	식사 등
	20:00	기업 간 교류활동
2020. xx. xx.	06:30	조식
	10:30	해산

- 당시 진행 내역을 보면 eee 행사장소가 타 지역이라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회의장소 대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연수구 소재의 B호텔에서 대관료를 지불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당시 워크숍을 위해 연수구청 대회의실 또는 아트홀 등 공간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호텔에서 대관료 1,748,100원 및 음향·장비 사용료 816,000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또한 당시 eee 행사 참여 대상자는 연수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었으며, 행사 2일차의 경우 아침 조식 후 해산한 점을 보아 연수구 관내 호텔 에서 숙박을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28,000원의 숙박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아울러, A는 [표 7] 연번 2와 같이 lll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장, 기업역량 확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기업간 컨소시엄을 통한 협업모델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하였으며 기존 연수구 ☆센터 홈페이지와의 비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9] : 기존 ☆센터 홈페이지와 플랫폼 홈페이지 비교

기능 구분	☆센터 홈페이지	플랫폼 홈페이지
정책 및 지원사업 안내	○	○
교육 및 행사 안내	○	○
사회적경제기업 소개	○	○
각종 고시, 공고	○	○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소개	X	○
협업 프로젝트 소개	X	○

- 위 [표 9]와 같이 기존 ☆센터 홈페이지와 플랫폼 홈페이지의 차이점은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소개 및 협업 프로젝트인데, 상품소개는 경우 해당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주문하는 방식이 아닌 단순 문의 기능만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협업 프로젝트 소개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신청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데, 각 신청사업의 경우에도 기업이 직접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 단순 안내 기능 외에는 새로운 기능이 없다.
- 각종 행사나 고시·공고 게시물의 조회수를 비교해본 결과, 플랫폼 홈페이지의 경우 평균 조회수가 3~4회에 불과한 반면 기존 ☆센터 홈페이지는 각 게시물 당 50회 이상, 많게는 1,000회 이상 까지도 조회 수가 확인된다.
- 위와 같이 플랫폼 홈페이지와 기존 ☆센터 홈페이지의 기능상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 이후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A는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의 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A에 대하여 명확한 예산편성·집행 지침 및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 후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권고)
향후 사업 진행 시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실시 여부를 전면 재검토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련번호 :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 통장 등) 제6항에 따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1년에 추진된 ‘◇◇◇ 사업’ 지방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먼저 교부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보조사업자가 교부신청 시 제출한 계획과 달리 간식비를 식대로 다르게 집행하였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 보고서의 참여인원과 증빙자료의 참여인원이 차이가 있는 등 실제로 ◇◇◇ 활동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업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과의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에는 이러한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유사·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보조금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권고,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1.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
 - 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 배양
 - 3. 지방재정의 자립기반 조성
 - 4.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
 - 5.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
- 상기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지원 단체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자기자금부담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 ○○○과에서는 2020년, 2021년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20년에는 104개소, 4천9백9십만원, 2021년에는 101개소, 4천9백2십만원을 지원하였다.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사업 및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청제한 요건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과에서는 ◇◇◇사업 추진 시 ‘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상 우선 선정’ 제한과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진행하여 사업자의 적격성 판단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 사업대상 지정 및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원신청 사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과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영업 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지 않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자기자금부담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과에서는 2021년, 2022년 위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 없이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초 사업목표에 맞는 객관적인 성과가 미비하여, 구 예산의 건전재정 운용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신청제한 요건을 수립하기 바라며, 선착순 접수방식을 지양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자기부담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기준) 마련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

- 아울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현재 구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편성 및 지원을 지양하고, 구 예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 일련번호 : 2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22년도 특정감사 지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즉시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부서·기관명】 ○○○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보조금지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지방보조사업 관리통장 등) 제6항에 따르면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과에서는 2020년도 ‘◇◇◇ 사업’ 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지 않았으며, 2021년도 ‘△△△ 사업’ 에 대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먼저 교부하여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과장은 향후 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방보조금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